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5363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윤문수, 안은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변론 종결 2020. 6. 17.

판결 선고 2020.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분의 1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81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0,816,505원 중 196,467,754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나머지 4,348,751원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10개동 72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2010. 12.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 2) 피고는 2009. 6. 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방화문 중 일부인 '전유부분 현관문'과 '전유부분 대피공간 철재 방화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원고와 피고는 2009. 6. 1.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30.과 2010. 8. 20.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방화문 등의 하자 관련 선행 소송

-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방화문 등 각종 방화문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709세대로부터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6129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선행 소송에서 2016. 9. 28.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3) 선행 소송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인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시험체 12개에 대한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및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시험체 전부가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또는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에 합계 576,470,985원(공용부분 87,974,098원, 전유부분 488,496,887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감정결과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표본으로 선정된 시험체 6개(전유부분 현관문 4개, 전유부분 대피공간 철재 방화문 2개로서 그중 전유부분 현관문 시험체 4개는 피고가 납품하지 않는 디지털 도어락이 부착된 상태로 성능시험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전유부분 현관문	F호	시험체㉠ (내측면) 시험체㉡ (외측면)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G호	시험체㉠ (내측면)	합격	합격				
H호	시험체㉠ (내측면) 시험체㉡ (외측면)	불합격	불합격	합격			
I호	시험체㉠ (내측면)	합격	합격				
전유부분 대피공간 철재 방화문	F호	시험체㉠ (내측면)	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G호	시험체㉡ (외측면)	합격	불합격				

4)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설치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설치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방화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사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방화문에 내화성능이 없는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성능시험에서 방화문에 화염 등이 발생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5) 선행 소송의 법원은 '피고가 제조하여 KS인증을 받은 방화문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동종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방화문을 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힘을

주거나 충격을 가함으로써 방화문이 뒤틀리거나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방화문 시험체 일부에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락,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성능시험 당시의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도어락, 도어클로저 자체가 화염 발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KS F 2268-1에 의하면 방화문 내화시험의 대상인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시험은 모든 지지물과 장치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경첩, 빗장, 문 손잡이, 잠금 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전선 등 시험 중 시험체의 내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설령 디지털 도어락 등 잠금 장치 부분이 화염 발생 등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전체에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의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다음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76,470,985원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2018. 12. 13.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30,95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6)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0,167,2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방화문으로서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납품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선행 소송의 감정결과에 따른 방화문 전체의 하자보수비 576,470,985원에서 선행 판결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60%를 반영한 345,882,591원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로서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96,467,754원과 원고가 선행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7,656,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4,348,751원의 합계 200,81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되, ㉞ 하자보수비 196,467,754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㉟ 선행 소송의 소송비용 4,348,751원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가)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1) 및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09. 6.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2)의 규정과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은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에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유부분 현관문 시험체(F호, H호)의 디지털 도어락 부위에서 화염이 발생하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세어 나왔고, 전유부분 대피공간 철재 방화문 시험체(G호)의 문틈으로 연기가 세어 나온 사실, 전유부분 현관문 시험체에서 문짝이 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방화문에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또는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에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선행 판결은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락을 부착한 상태의 전유부분 현관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 디지털 도어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피고가 납품한 전유부분 현관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선행 소송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방화문이 KS인증을 받은 점, 이 사건 방화문과 동일한 방화문으로서 피고가 다른 아파트에 설치한 방화문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방화문에 하자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소송의 감정결과와 선행 판결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고,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선행 소송의 법원이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방화문에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선행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인 피고와 피참가인인 원고가 공동이익으로 주장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선행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인정한 선행 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하자보수비 196,467,754원 청구 부분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제1, 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전체의 하자보수비가 576,470,98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하자보수비에서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책임 제한 비율 60%를 반영한 345,882,591원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96,467,7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96,467,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은 설치 당시부터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 존재하는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의 발생시기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12. 23.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5.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12. 23.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인 2013. 8. 20.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9. 28.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6. 30.자 및 2010. 8. 20.자 하도급 변경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0. 8. 21.부터 2013. 8. 20.까지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서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가 사용검사 전 하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사용승인일인 2010. 12. 23.부터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2015. 12. 23.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는 시효 완성 후인 2016. 9. 28.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인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즉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한편 도급인이 아파트의 하자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납품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30,95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선행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원고가 2019. 1. 1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90,167,2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행 판결의 원금 330,957,603원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187,990,082원(330,957,603원 × 196,467,754원/345,882,591원,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87,990,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제2의 나. 2) 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12. 23.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인 2013. 8. 20.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 28.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2의 나. 2) 가)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방화문을 납품함에 따라 선행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바, 이는 본래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책임을 원고가 대신 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96,467,75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행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시공사로서 자신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이지 피고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송비용 4,348,751원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납품하여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선행 소송에 응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5. 1. 15. 4,400,000원, 2019. 1. 7. 3,256,000원 합계 7,656,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전체의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위 소송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4,348,7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4,348,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서 주된 채권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그 발생 원인 및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2015. 1. 15. 및 2019. 1. 7.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5.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348,7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자연손해금을 지급한 2019. 1. 11.부터의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자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권소영

판사김경준

1)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